성과평가및성과급지급에관한규정 4-2-19

규정번호	4-2-19
제정일자	2016.3.1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9차 개정
관리부서	교무입학팀 총무회계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쟁력향상과 소속 교원 및 직원(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계약직은 제외)의 업무성과를 장려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명지학원 보수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교직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4. "성과계약"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5. “자체평가위원회”란 우리대학 대학자체평가규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평가시기) 성과평가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성과급 지급 예산) 성과급 지급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조(성과급 지급 시기) 성과급 지급 시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성과급 지급 기준액) 성과급 지급 기준액은 제4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성과급 지급 대상) 성과급 지급 대상은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자와 평가 당해연도 전 학기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자와 강의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제외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9.25.)

제8조(성과급 지급등급 및 지급액) 성과급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성과평가) ① 제6조의 성과급 지급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원, 직원별로 각각 성과평가 기준 및 항목 [별표2] 및 [별표7]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6.05.16., 별표7 개정 2022.04.08)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아래 각호 대상자는 총장이 별도로 [별표3-3]을 평가한다.

1. 부총장
2. 각 행정실·처장
3. 부속기관장 및 연구소 소장

③ 성과평가 기준 및 항목 [별표2]에 대한 평정자는 교원평가표 [별표3-1]부터 직원평가표 [별표3-2]까지, 자체평가위원회의 장은 각 부서별사업평가자료 [별표4]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며 총장은 평가결과 확인 및 최종평가 후 [별표5]의 성과평가등급표를 작성한다. 단,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 대계열(인문・사회, 공학, 예체능, 자연과학, 의학계열) 학과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성과평가등급표를 작성한다.(개정 2018.10.29.)

제10조(평가방법) ① 교원의 성과평가는 소속 학과별 평가와 개인별 교육업적평가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별표2]의 교원 성과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직원의 성과평가는 소속부서별 성과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평점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별표2]의 직원 성과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원의 부서별 성과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서별 평가지표에 관한 성과면담을 통하여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7조의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성과평가항목 및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3.09.25.)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별표 7>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10조제4항)

부 칙[별표개정]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7)

부 칙[별표개정]

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별표7)

부 칙[별표개정]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별표1]

성과급 지급 등급 및 지급액

(제8조와 관련)

지 급 등 급		지 급 액
지급액	지 급 인 원	
S등급 (매우 우수)	10% 인원 (상위 10% 이상자)	제4조에서 정한 기준금액의 300% 이상금액
A등급 (우수)	20% 인원 (상위 30% 이상자)	제4조에서 정한 기준금액의 200% 이상금액
B등급 (보통)	30% 인원 (상위 60% 이상자)	제4조에서 정한 기준금액의 100% 이상금액
C등급 (미흡)	20% 인원 (상위 80% 이상자)	제4조에서 정한 기준금액의 50% 이상금액
D등급 (매우 미흡)	20% 인원 (상위 80% 미만자)	지급하지 아니함

※ 총장은 각 등급별로 10%의 범위 내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2](개정 2016.05.16., 2018.10.29)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제9조와 관련)

<table>
<tr><th>평가
대상</th><th colspan="2">평정자</th><th colspan="3">평 가 기 준</th><th>만점</th></tr>
<tr><td rowspan="6">교원</td><td rowspan="5">1차</td><td rowspan="5">해당
부서의 장</td><td colspan="3">- (해당학과 평가총점수)X$\frac{1}{2}$
※ 학과정원조정평가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되
성과급 지급학년도의 직전학년도 실적중심 평가</td><td>30</td></tr>
<tr><td colspan="3">- {개인별 1,2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A) + (A-1,2학기 학과강의평가 평균점수)} × $\frac{1}{2}$ - 10점
※ 성과급 지급 직전 학년도의 실적에 의거</td><td>20</td></tr>
<tr><td colspan="3">▫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교수활동 실적[별표7] × $\frac{1}{5}$</td><td>10</td></tr>
<tr><td colspan="3">▫ 산학협력 실적 : 최대 30점 반영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평가항목</th><th>산출내역</th><th>최대
점수</th></tr>
<tr><td rowspan="15">산학
협력
지수</td><td rowspan="5">ICC
연계</td><td>프리미엄멤버십
(재)가입</td><td>B등급 가입 건 수 X 0.5점
E등급 가입 건 수 X 1점
S등급 가입 건 수 X 1.5점
T등급 가입 건 수 X 2점</td><td>4점</td></tr>
<tr><td>ICC협의체 구성</td><td>ICC협의체 참여기업 추천 건수 X 1점</td><td>3점</td></tr>
<tr><td>(외부)산학공동
연구</td><td>(주관) 산학공동연구과제 X 2점
(참여) 산학공동연구과제 X 1점</td><td rowspan="3">8점</td></tr>
<tr><td>재직자교육</td><td>유료 재직자교육 개최 건수 X 2점
무료 재직자교육 개최 건수 X 1점</td></tr>
<tr><td>애로기술지도</td><td>애로기술지도(1일 4시간 이상/건) 건 수 X 2점</td></tr>
<tr><td colspan="2">공용장비 활용</td><td>공용장비 활용 건 수 X 1점</td><td>3점</td></tr>
<tr><td colspan="2">산학협력행사 참여</td><td>산학협력포럼, 성과공유회 등 산학협력처(단)주관 프로그램 참여(건당 1점)</td><td>4점</td></tr>
<tr><td colspan="2">(학과별)산학협력협의회</td><td>3회 이상 개최(1점), 2회 개최(0.5점)</td><td>1점</td></tr>
<tr><td colspan="2">현장연구일 참여</td><td>현장연구일 참여 일수 X 0.5점</td><td>3점</td></tr>
<tr><td rowspan="6">지식
재산
권</td><td rowspan="3">특허 출원 및
등록</td><td>특허출원 건 수 X 1점</td><td rowspan="6">8점</td></tr>
<tr><td>국내 특허등록 건 수 X 3점</td></tr>
<tr><td>해외 특허등록 건 수 X 5점</td></tr>
<tr><td rowspan="2">논문</td><td>SCIE급 논문 게재 건 수 X 4점</td></tr>
<tr><td>KCI급 논문 게재 건 수 X 2점</td></tr>
<tr><td>기타</td><td>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등 건 수 X 1점</td></tr>
<tr><td rowspan="4">기타
실적</td><td colspan="2" rowspan="4">기술이전</td><td>기술이전비 1,000천원 이상(3점)</td></tr>
<tr><td colspan="2" rowspan="3">학과별 간접비
수입(합계)</td><td>20,000천원 이상</td><td>3점</td></tr>
<tr><td>5,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td><td>2점</td></tr>
<tr><td>5,000천원 미만</td><td>1점</td></tr>
</table>
</td><td>30</td></tr>
<tr><td>2차</td><td>총 장</td><td colspan="3">- 개별정성평가[별표6-1]
※ 대학발전 기여 및 학사참여도</td><td>10</td></tr>
<tr><td colspan="2">계</td><td colspan="3"></td><td>100</td></tr>
<tr><td>직원</td><td>1차</td><td>자체평가
위원회</td><td colspan="3">- (해당부서별 성과평가점수)X$\frac{1}{2}$
※ 자체평가위원회 선정 KPI중심 평가</td><td>50</td></tr>
</table>

		해당 부서의 장	- (개인별 근무평정 점수)-60	40
	2차	총 장	- 개별정성평가[별표6-2] ※ 대학발전 기여 및 친절도	10
	계			100

※ 평가대상기간 중 인사이동을 한 직원의 팀별 사업성과 평가는 근무기간 비율 감안

[별표3-1]

교원 성과평가표

소속 : 학과

번호	직위	성명	평가점수				비고
			학과평가 환산점 (50%)	교육업적 평가 환산점 (40%)	개별정성 평가 환산점 (10%)	계	

※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재함.

20 . . .

위 작성자

직위 : 성 명 : (인)

[별표3-2]

직원 성과평가표

소속 : 팀

번호	직위	성명	평가점수				비고
			부서별 평가 환산점 (50%)	개인별 근무평정 환산점 (40%)	개별정성 평가 환산점 (10%)	계	

※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재함.

20 . . .

위 작성자

직위 : 성 명 : (인)

[별표3-3]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성과평가표

(제9조 제2항 대상자 포함)

번호	직 위	성 명	평가점수	비 고

※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재함.

※ 평가는 교·직원 평가기준과 개별정성평가기준을 참작하여 작성함.

20 . . .

위 작성자

직위 : 총장 성 명 : (인)

[별표4](개정 2017.02.27.)

각 부서별 사업 평가 자료

1. 팀 작성 사항

사업항목	사업목표	사업 추진내용	사업성과	비고

※ 사업항목은 대표적인 주요사업만 기재하며 일상적인 업무진행 사항은 제외함.

※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

20 . . .

위 작성자

부서명 : 부서장 : (인)

2. 자체평가위원회 평점 사항

사업항목	사업목표	사업 추진내용	사업성과	비고

※ 평가항목은 각각 A, B, C, D, E로 평가하여 기재함.

위 평정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 (인)

[별표5]

성과평가 등급표

소속	직위	성명	평가점수			평가 등급	비고
			1차평정	2차평정	계		

※ 평가등급은 직종별로 확정한다.

20 . . .

위 작성자

직위 : 총장 성 명 : (인)

[별표6-1]

교원 정성평가 평가표

(단위 : 천원, 건수)

소속	직위	성명	정성평가 항목 및 실적						평가 점수	비고
			발전기금	학사개선 제안제도	재정기여			외부기관 표창 및 수상		
					재정지원사업	외부 연구과제	학생 장학금 유치			

※ 대학 추천에 의한 표창 및 수상은 외부기관 표창 및 수상 실적에서 제외함.

※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재함.

20 . . .

평가자

직위 : 총장 성 명 : (인)

[별표6-2]

직원 정성평가 평가표

(단위 : 천원, 건수)

소속	직위	성명	정성평가 항목 및 실적				평가 점수	비고
			발전기금	제안제도	외부기관 표창 및 수상	부서별 교육만족도		

※ 대학 추천에 의한 표창 및 수상은 외부기관 표창 및 수상 실적에서 제외함.

※ 부서 교육만족도 점수를 부서 구성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재함.

20 . . .

평가자

직위 : 총장 성 명 : (인)

[별표7](신설 2016.05.16., 2018.10.29., 2020.05.25., 2022.04.08., 2025.12.01., 2026.2.6.)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 교수활동 평가항목 및 점수

평가 점수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활동				교수·학습 역량 및 활동		
	교수참여	교육과정 운영	학과CQI 보고서	교육과정 전문활동	수업혁신 (MJC-ILC(+)운영)	교육참여	교내활동
5점	교육과정 전담교수 /진로전담교수	6강좌 이상	책임	발표 1건당	개발교과목	교외 연수참석	상담지도교수
4점		5강좌			인증·유지 교과목	교내 연수참석	티칭테이블/ 동아리지도
3점	교육과정 개발위원	4강좌	참여	강의 1건당			튜터링 지도
2점		3강좌		심사/자문 1건당			
1점		2강좌		외부회의 1건당			

※ 교수학습 수업혁신(MJC-ILC(+)운영)의 경우 평가 점수는 각 2배수 적용한다.

※ 교육과정 전담교원, 진로전담교수 : 위촉기간 6개월 이상시 인정